

과업내용서

【2016년 건설폐기물(하수) 처리용역(연간단가)】

2016. 1.

강남구청
안전교통국 치수과

과업내용서

I. 과업개요

1. 과업명 : 2016년 건설폐기물(하수) 처리용역(연간단가)
2. 대상위치 : 강남구 관내
3. 목적 : 본 용역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개량공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 ~ 2016. 12. 31.
5. 용역내용 : 강남구 치수과(하수)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하수) 위탁처리

II. 일반사항

1. 착수계 및 기타서류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별 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사 명단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계약담당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3. 용역이행 조건
 - 1) 발주자 또는 시설용역 감독자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용역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 통념상 인정할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2) 폐기물량 정산 시 공사물량보다 처리물량이 많을 경우 공사물량으로 정산한다.
- 3)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대금지급방법

-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에 대하여 감독(감리) 및 건설공사 현장 대리인의 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공인계량소에서 발급한 폐기물 계량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운반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른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III. 과업의 내용

1. 기본지침

- 1) 본 과업 내용서에서 서울시 강남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한다.
-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4)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업무수행 지침

- 1) 폐기물 반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45조에 근거하여 「올바로시스템」

전산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폐기물 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반출량 확인을 위하여 공인계량소에서 표본 계량에 응하여야 한다.
- 6)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관련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7) “계약상대자”는 감독(감리)관의 작업지시에 대하여 완료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시 공제할 수 있음)